

「2024년 3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혁신형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11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I.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2.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기업 : TV 0개사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TV 광고 제작비 지원 (부가세 제외 기준)
 - 지원액 :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지원 최대 한도 4,500만원)
 -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
 - 지원 대상 선정기업은 5일 이내 공사와 협약체결
 - 신청 시 약정한(지원 신청서 상에 기재한) 방송광고 송출 예정 금액 준수

- 신청 시 약정한(지원 신청서 상에 기재한) 방송광고 품목 준수
- 방송광고물 제작과 제작물로 송출까지 완료한 이후 지원금 신청. 제작비 내역에 대해 외부 검증 후 지원금 지급 (제작비 지원금 신청·검증에 관한 서류는 선정 이후 제공)

II. 주요 내용

1. 신청 자격

지원대상 : 중소기업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 (인 증 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인증서를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 그린비즈 중소기업, 글로벌IP(지식재산)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 지원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그린뉴딜유망기업, 아기유니콘기업, 혁신제품지정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서울형강소기업인증기업
 - ※ 인증서는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에 한함
- 단, 신청일 현재 다음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2023년 본 사업을 통해 TV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은 기업
 - ※ 라디오 제작비를 지원 받은 기업의 경우 TV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를 집행한 기업
 - ※ 단, 라디오 광고 집행 실적만 있는 기업의 TV 지원의 신청은 위 기간 제한 없이 가능

- 직전 2개년도(2022, 2023)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기업
- 2024년도 1차, 2차 공모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협약체결 후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기업
 - ※ '24년부터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공사와 협약체결(협약체결일) 이후 사업수행을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3개년(지원 신청연도+3년)간 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함
 - ※ (3차 공모시) 1차, 2차 공모 신청기업 및 1차, 2차 공모 시 예비사로 선정된 기업 중 협약 체결 이전에 사업수행을 포기한 기업은 3차 공모 신청 가능

2. 신청 절차

신청기간

- '24. 10. 11(금) ~ 10. 24(목) 18:00까지

[참고 : '예비기업' 개념]

- 예비기업 : 선정 기업 중 사업 포기 기업 발생 시 후순위로 평점 내림차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회 부여(기업의 사업 수행 경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음)

- 신청방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www.kobaco.co.kr/smad)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1	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2	방송광고 집행계획서	1부		온라인 작성
3	기업인증서	각1부		벤처, 이노비즈 등 인증서 (온라인 첨부) ※ 인증 유효기간 확인 필수(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4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온라인 첨부) ※ 발급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이용(https://www.hometax.go.kr)
5	3개년 재무제표	1부		2021 ~ 2023년 재무제표 (온라인 첨부) ※ 발급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이용(https://www.hometax.go.kr) ※ 신설된 지 3년 미만 기업은 설립 해부터 2023년까지의 재무제표 제출
6	가점사항 증빙서류		1부	고용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서(5점) (온라인 첨부)

3. 평가 절차

□ 평가방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서류검토 및 계량평가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협의회의 평가로 지원 대상 선정
- (서류검토) 사업담당자를 통해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
 -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계량평가) 신청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및 매출액 순이익을 평균을 계량화하여 평가
- (비계량평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의 사업 신청서 및 방송광고 집행계획서 등을 평가
 - ※ 가점평가 : 고용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고용우수기업, 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소재 기업은 가점(5점)부여. 가점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총점에 합산. 단, 중복일 경우 한 개의 가점만 적용

□ 선정기준

- 평점 산출 결과 기준 점수(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 우선 선정기업 중 평점 내림차순 순서에 따라 모집 기업 수만큼 지원대상을 1차 선정하여 지원협의회를 통해 논의 후 지원대상 기업 최종 확정. 그 외 기업은 예비순번 부여.

- ※ 평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하고, 평점이 같을 경우 매출 적은 기업순으로 선정
- ※ 평점 산출 결과 기준점수(60점) 이상인 기업 중 지원기업으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예비사로 선정(내림차순에 따라 순번 부여)
- ※ 포기 기업 발생 시 예비사를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3차 모집의 예비사는 1차, 2차 모집의 예비사의 선순위로 예비순번 부여, 포기 발생시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
 - 단, 1차, 2차, 3차 모집에서 중복으로 예비사가 된 경우, 3차 모집의 예비순번을 기준으로 하며 1차, 2차 예비순번은 삭제 처리

• TV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배점기준(TV)
계량 50점	기업현황 (30)	성장성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상(15) 중(12) 하(10)
		안정성	최근 3년 매출액 순이익율 평균	상(15) 중(12) 하(10)
	방송광고 활용 (20)	방송광고 집행예정 규모	100백만원 이상	20
			50백만원 이상~100백만원 미만	18
20백만원 이상~50백만원 미만			16	
20백만원 미만	14			
비계량 50점	상품경쟁력 (30)	경쟁력	가격, 품질, 성능, 판매 등 경쟁력	상(30), 중상(25), 중(20), 중하(15), 하(10)
	시장성장 (20)	독창성	시장 개척 및 선도, 제품의 확산	상(20), 중상(16), 중(12), 중하(8) 하(4)

※ 기업현황 관련 세부평가 기준은 다음 [붙임]자료 참조

4.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
(www.kobaco.co.kr/smad) 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4, 7320~7322, smst@kobaco.co.kr

5. 선정기업 발표

-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및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10/30 예정)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및 결과조회]에서 '신청결과' 항목이 '선정'으로 표기된 경우 합격

[붙임]

<* 지원신청기업 기업현황 관련 세부평가 기준 방안>

- 최근 3년(2021~2023년) 매출액 증가율
 - 12.5% 이상인 경우 <상>
 - 0% 초과 12.5% 미만인 경우 <중>
 - 0% 이하인 경우 <하>

- 최근 3년(2021~2023년) 매출액순이익율 평균
 - 3.87% 이상인 경우 <상>
 - 0% 초과 3.87% 미만인 경우 <중>
 - 0% 이하인 경우 <하>

[참고] 한국은행 발간 2022년 기업경영분석

2020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3.9%
2021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19.2%
2022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14.4%
⇒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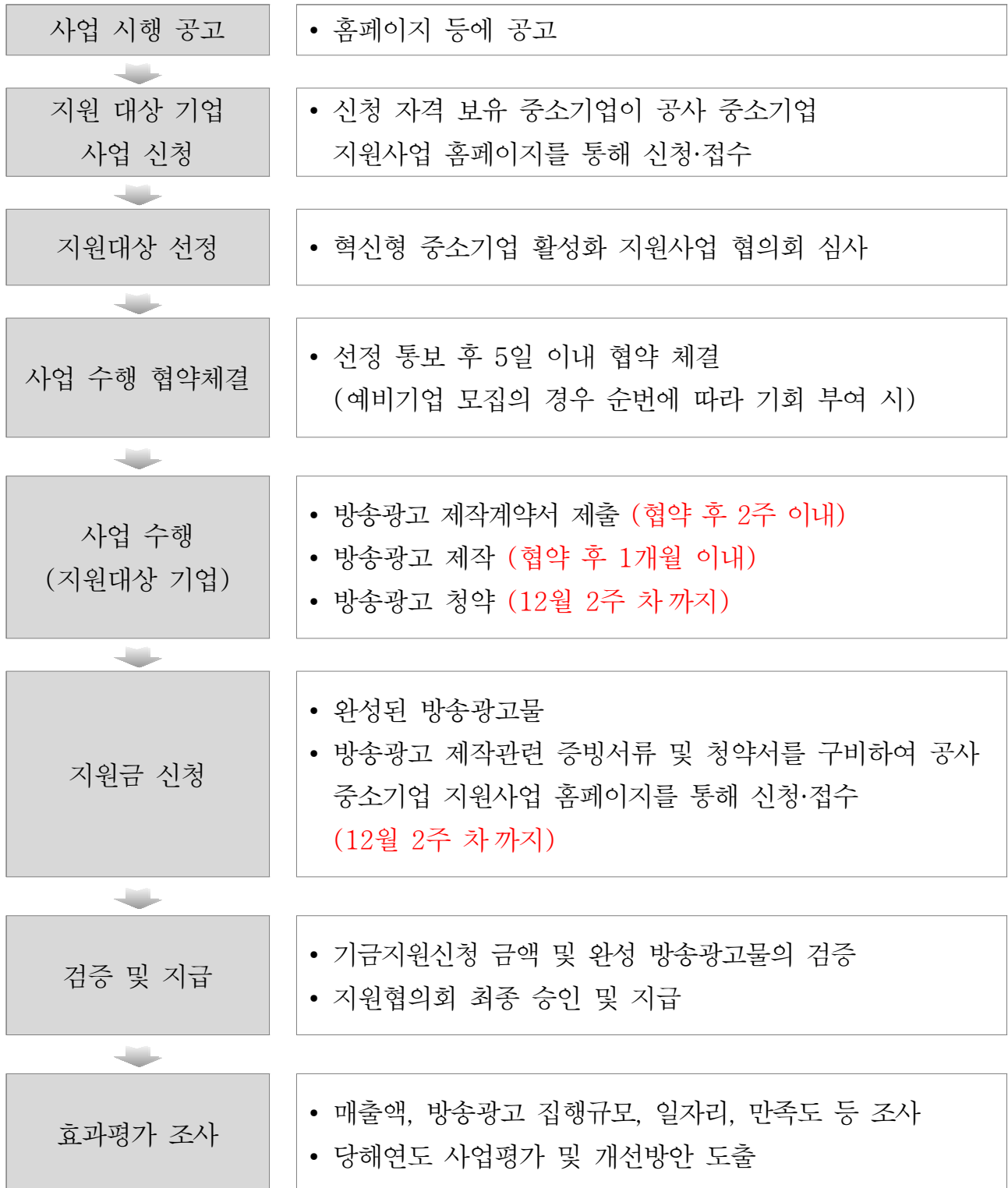
2020년 중소기업 평균 순이익율 3.5%
2021년 중소기업 평균 순이익율 4.4%
2022년 중소기업 평균 순이익율 3.7%
⇒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3.87%

※ (창업기업) 2022년, 2023년 2개년 또는 2023년 기업현황만 있는 경우 <중>으로 평가. 2021년~2023년 기업현황이 모두 없을 경우 <중>으로 평가

※ 기업 현황은 기업의 연도별 결산서를 근거로 함

* 재무제표는 2021, 2022, 2023년 3개년 결과 적용

6. 사업추진 절차



7.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규로 제작한 방송광고물을 대상으로 함 (신규로 제작된 방송광고물의 최초 심의 신청일은 협약체결일 이후여야 함)
- 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 기타 지원기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
- 방송광고 제작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신청 시 약정한(신청서에 작성한) 방송광고 송출 금액 준수
 - 본 지원사업은 방송광고 제작비만을 지원하며, 송출비는 지원하지 않음. 단, 제작비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방송광고 송출을 완료해야 함
 - ※ 코바코는 본 제작비 지원사업 외에 방송광고 송출관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두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각각 신청 및 선정되어야 사업별 지원(혜택)이 가능함

8. 참고사항

- (주의!) 코바코는 본 사업 관련 공식 지정·제휴·인증 업체가 없음. 최근 ‘코바코 공식 인증 업체’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요망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권역별 광고제작사 소개자료 및 광고 제작계약서 샘플 등 제공

II. 컨설팅 서비스 주요 내용

1 컨설팅 서비스 목적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대상 중소기업에게 1:1 맞춤형 광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효과 제고

2 컨설턴트 자격

- 광고회사, 광고 제작사, 광고학과 교수 등 광고업계 및 학계 5년 이상 경력자

3 컨설팅 내용

- 광고 기획, 제작, 집행 등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자문
- 사전 진단 후 본 컨설팅 실시(대면상담)
- 컨설팅 종합 결과보고(지원기업, 공사)

사전 컨설팅	- 컨설팅 이슈 파악을 위한 사전 진단 실시 - 광고 기획, 계약, 제작, 집행 등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자문
본 컨설팅	제작 - 지원기업의 환경과 필요에 맞는 제작 방향·방식 추천 - 제작사 추천리스트 등 정보 제공 및 연결, 견적 비교 등 지원 - 계약서 내용 적정성 및 저작권 등 문제 소지 부분 확인 및 상담 - 과업요청서·PPM·촬영·후반작업 등 제작 과정 지원 - 완성 제작물 검증
	청약·송출 - 지원기업의 환경과 필요에 맞는 매체 및 상품 추천 - 청약 방식 안내, 청약 내용 확인 및 상담

※ 단, 사업 종료연도까지 본사업 선정기업의 제작사/대행사로 활동 불가

- 컨설팅 지원 내용
 - 1사당 최대 7시간 컨설팅 제공 (TV/라디오 공통), 희망기업 중 정월 내 점수순 선발
 - 지역 소재 지원기업의 경우 수도권 컨설턴트가 배정될 수 있음
 - 컨설턴트는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후 공사에서 배정하며, 컨설팅 비용은 공사
에서 부담함